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7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변론 종결 2021. 4. 2

판결 선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12. 경 C와 서울 서초구 D 소재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2014. 7. 30. C가 지정하는 피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주식회사 레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F은 E의 편법 증자를 위해 지인인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E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2014. 7. 30.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주식회사 어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돈중 7,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7,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C의 지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C의 지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를 운영하던 F의 지인이고, 원고나 C와는 알지 못하는 사실, E는 2014. 7. 30. G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은 G의 다른 계좌로,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7. 30.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을 그대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14. 7. 30.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7,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장재익